

4.3.3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20. 02. 05.	개정	2022. 07. 28.
개정	2006. 10. 19.	개정	2020. 02. 28.	개정	2022. 12. 07.
개정	2013. 08. 26.	개정	2020. 05. 29.	개정	2023. 02. 02.
개정	2016. 06. 23.	개정	2020. 08. 19.	개정	2023. 08. 07.
개정	2017. 09. 14.	개정	2020. 09. 28.	개정	2024. 04. 01.
개정	2018. 01. 25.	개정	2020. 11. 26.	개정	2024. 07. 23.
개정	2018. 03. 14.	개정	2021. 02. 25.		
개정	2018. 09. 05.	개정	2021. 06. 02.		
개정	2018. 10. 23.	개정	2021. 11. 29.		
개정	2019. 02. 01.	개정	2022. 02. 03.		
개정	2019. 08. 30.	개정	2022. 04. 04.		
개정	2019. 12. 03.	개정	2022.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칙 제35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6.>

제2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학생 및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3.08.26., 2018.01.25.>

②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 능력, 희망과 산업사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특정의 직종 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④ 각 학과에서는 교육과정 연간 운영계획을 매 학년도 연말에 다음 각 호 내용 및 교육과정인증평가결과, 강의평가 결과, CQI분석결과, 성과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6.>

1. 학과 진로분야 산업동향 및 전망
2. 학과 교육과정 장단점
3. 교육수요자 요구
4. 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5. 핵심역량/전공능력 및 교과목 연계성
6. 교과목 이수체계

<전 호 신설 2020.11.26.>

제2조의 2(전공능력 편성원칙) ① 전공능력은 각 학과의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에서는 전공능력을 설정할 시 다음 각 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 설정하도록 한다.

1. 외부 및 내부환경 분석 결과(기술·경제·사회·취업 등)

2.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등의 요구분석 결과
 3. 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고려
 4. 학과 교육과정 장·단점 분석 결과
 5. 전공능력과 교과목 연계성 분석 결과
 6. 교과목 이수체계 고려
- ③ 각 학과에서는 설정한 전공능력을 교무처로 제출하며, 학과의 전공능력 설정 결과를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당 결과를 교육혁신위원회로 최종 심의 의뢰 하고 그 결과를 학과에 환류한다.
- ④ 각 학과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02.25.〉

제2장 교육과정의 구분과 교과목의 정의

- 제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커스텀교육과정, 연계전공과정, 융합전공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23., 2019.12.03.〉
- ②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교직교과, 평생교육교과, 커스텀교과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23., 2024.04.01.〉
- ③ 전공 및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다. 〈개정 2016.06.23.〉
- ④ 삭제〈2016.06.23.〉

- 제4조(교과목의 정의) ① 교양교과란 본교 교육이념과 교훈에 기초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로서 CDU중핵과정과 균형교양영역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3.08.26., 2016.06.23., 2018.01.25., 2020.02.05.〉
- ② 전공교과란 교육과정편성원칙에 따라 전공교육에 필요한 교과로서 각 학과(부)에서 단일교육과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 ③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로서 교직이수대상자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희망자를 위하여 선택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 ④ 편성과목이란 교육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을 말하며, 개설과목이란 편성과목 가운데에서 학년, 학기별로 설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 ⑤ 평생교육사과목은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과목을 말하며, 커스텀과목은 주문식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0.02.05., 2024.04.01.〉

제3장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 및 복수전공

제5조 삭제 〈2019.02.01.〉

제6조 삭제 〈2019.02.01.〉

제4장 교육과정편성의 기준과 방법

제7조(교육과정편성의 기준) 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인증평가 및 교육수요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 전공능력 또는 핵심역량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학과(부) 및 전공별로 편성하되, 주간과 야간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2020.09.28.>

②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HUMAN PLUS 교양학부에서 주관하며 핵심역량 배양과 관련하여 CDU중핵, 균형교양 교과목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개정 2016.06.23., 2018.01.25., 2019.12.03., 2020.11.26., 2022.06.09.>

③ 전공과목과 유사한 교양과목은 가급적 전공과정으로 흡수 유도한다. <개정 2020.11.26.>

④ 전공교육과정은 81학점 이내(글로벌혁신대학 소속 학과는 71학점 이내)에서 단일교육과정으로 편성하되 동일 내지 유사교과목의 중복편성은 지양하여야 하고, 전공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심화된 전공이수가 가능하도록 교과목을 개발·편성한다. 단, 자격증 취득 등 학과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8.26., 2016.06.23., 2018.01.25., 2022.06.09., 2024.04.01., 2024.07.23.>

⑤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교직과정은 입학연도별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은 교무처에서, 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6.06.23., 2019.12.03.>

⑦ 실험실습은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전공교과 학점배분의 20~50%까지 과할 수 있다.

⑧ 실험실습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3학점단위로 편성하되 학과특성에 맞춰 3학점 이내로도 가능하다. 또한 동일 과목을 2학기 이상 개설할 때에는 선·후 이수순위를 I, II 등의 순서로 표시한다. <개정 2016.06.23.>

⑨ 커스텀 교육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편성하며 6학점 이내에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6.23.>

⑩ <삭제 2024.04.01.>

⑪ 학생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학점은 제4항 전공 개설 학점 기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2.05.>

⑫ 전공교육과정과 별도로 초당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는 일반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제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6.02.>

⑬ 기 편성된 전공교과목이 수강신청인원 미달로 2회 연속 폐강 시 해당 교과목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07.28.>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다전공 이수가 용이하도록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별 개설 과목은 60학점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1.>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매 학기 개시 전 강의 내용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하여 교양교과목 담당교원 전체가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09.05., 2019.12.03., 2020.11.26.>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년별, 학기별로 나누어 학과(부)장의 주재하에 교육과정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교수의 합의로 편성하며, 매 학기 개시전 강의 내용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하여 전공교과목 담당교원 전체(비전임교원, 강

사 포함)가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3.08.26., 2017.09.14., 2020.11.26.>

- ③ 복수전공이 용이하도록 전공교과목의 편성학점 범위를 60학점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 ④ 각 학과는 학년별 개설과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업 형태별로 1과목 이상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03.><개정 2020.02.28., 2021.11.29., 2024.04.01.>

수업형태	수업 방법
토론식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L(Problem-Based Learning/Project-Based Learning) : 문제중심학습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 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 TBL(Team-Based Learning): 팀기반학습 형태로 적정 규모의 팀원이 현안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지식을 창출 · DBL(Discussing-Based Learning): 토론을 통해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 · 액션러닝(Action Learning):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수학습자집단(4~8명)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원격혼합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선행학습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선행 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 ·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총 수업시간 중 온라인 수업비중이 70%미만 과목으로 원격수업(일반이론 지식, 이해 제고 관련 내용 구성)+대면수업(토론식 수업방식 적용) 형태로 구성 · 하이플렉스(HyFlex):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습자를 위해 녹화자료를 비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공

1. 삭제 <2021.11.29.>
2. 삭제 <2021.11.29.>
3. 삭제 <2021.11.29.>
4. 삭제 <2021.11.29.>
5. 삭제 <2021.11.29.>

- ⑤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1. 단계형 교육과정 : 교과목 내용상 학습 능력의 수준차가 큰 교과목에 적용하고, 학생의 학습 속도와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교육과정
 2. 보충·심화형 교육과정 :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기본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학생에게는 기초학습을 기본 이상의 수준을 갖춘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교육과정
<전 호 신설 2020.02.28.>

- ⑥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학기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 2020.11.26.>
 1. 교육과정 전반적 만족도
 2. 교과목 적합성 및 다양성
 3. 이수학점 적정성
 4. 교과목 강의 질

5. 교과목 운영 관련 개선점

6.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

7. 강의환경

〈전 호 신설 2020.11.26.〉

⑦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성과점검 및 분석은 교육과정인증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20.11.26.〉

〈개정 2022.12.07.〉

⑧ 원격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11.26.〉〈개정

2022.06.09.〉

제9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절차) ① 교무처장은 학년 개시 4개월 전에 교육과정편성기준을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 단과대학 및 각 학과(부)에 통보한다. 〈개정 2013.08.26., 2018.03.14., 2020.11.26., 2022.02.03., 2024.07.23.〉

② 교양교육과정은 HUMAN PLUS 교양학부장이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개편(안)을 작성하여 학년 개시 3개월 전에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13.08.26., 2016.06.23., 2018.03.14., 2019.12.03., 2020.11.26., 2022.06.09.〉

③ 단과대학 및 각 학(부)과에서는 전공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부)과 소속 전체 교원 및 재학생, 졸업생, 유관 분야 산업체 대표 각 1인을 포함하여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과대학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학(부)과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편성기준 및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하여 학년개시 3개월 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공교육과정을 확정한다. 〈개정 2013.08.26., 2018.03.14., 2020.11.26. 2022.02.03. 2022.07.28., 2024.07.23.〉

④ 삭제 〈2018.01.25.〉

⑤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교양교육과정은 HUMAN PLUS 교양학부에서, 전공 교육과정은 각 학부(과)에서 개편근거가 포함된 개편사유와 개편된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01.25., 개정 2019.12.03., 2020.02.05., 2020.09.28., 2022.06.09., 2023.02.02.〉

1. 핵심역량(교양) 또는 전공능력(전공)과의 연계성

2. 학문적 변화(산업동향 변화)

3. 관련 역량 또는 능력 보완(미흡 분야)

4. 교육과정인증평가 결과

5. 교육수요자 요구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

6. 기타 대학발전계획 연계 정책적 필요 등

〈전 호 신설 2020.09.28.〉

제5장 교과목의 개설원칙

제10조(교과목의 개설원칙) ① 각 학과(부)장은 교육과정에 의한 학기별 개설과목을 정하여 과목의 강의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 회의록, 교수별 담당교과목 및 시수표와 함께 수강신청 1개월 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질병, 장기파견, 휴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해당 교원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2016.06.23., 2019.08.30., 2020.05.29., 2023.02.02., 2024.04.01.>

1. 직전학기 강의평가 결과 교수평점이 4.0 미만인 경우
 2. 전체교원(전임/강사/점·초빙 등으로 구분) 중 교수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 <개정 2022.12.07.>
 3. 교수법 연수 또는 강의클리닉 코스 이수 대상 교원이 해당 기간 내 미이수한 경우
 4. 직전연도 또는 직전학기 교원업적평가 중 교육분야 점수가 하위10% 미만인 경우
 5. 직전 2개 학기 동안 담당강좌 중 폐강 강좌수가 4개 이상인 경우
 6. 직전 학기 수강신청 결과 제13조에 따라 폐강기준에 해당함에도 부득이하게 개설된 과목의 학점이 책임강의학점의 50%를 초과한 경우 <개정 2021.11.29.>
 7. 직전 2개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등급이 연속 C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8. 담당강의예정학점이 책임강의학점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전 호 신설 2019.08.30.>
 9.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교수평점이 전체교원(전임/강사/점·초빙 등으로 구분)별 하위 10% 이하인 경우 <신설 2022.12.07.>
- ② 학과(부)의 교육과정의 운영상 일부 교과목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해당 개편사항(신설, 명칭변경, 폐지, 학점 및 시수 변경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8.26., 2022.07.28.>
- ③ 교양교과목에 대하여는 각각 관장 학과(부)를 두고, 교과목의 개설 등 운영 사항에 대하여 주관한다. <개정 2013.08.26., 2019.02.01.>
- ④ 교양 필수교과는 3학년까지 개설하고, 교양선택교과는 전학년에 걸쳐 영역 구분없이 자유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 <개정 2018.10.23.>
- ⑤ 삭제 <2016.06.23.>
- ⑥ 전공교과의 개설 학점(분반 제외)은 학기당 42학점 이내(글로벌혁신대학 소속 학과 36학점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단, 자격증 취득 등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8.26., 2016.06.23., 2022.06.09., 2024.04.01.>
- ⑦ 단과대학 또는 학부 내 공통전공과목은 같은 학기에 통합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자가 수강제한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2024.07.23.>
- ⑧ 삭제 <2016.06.23.>
- ⑨ 삭제 <2016.06.23.>
- ⑩ 교과목 신설 시 <서식 제1호> 교육과정 개편 신청서에 전공능력 또는 핵심역량 제고와 관련한 개설 사유를 명시하고 전공과정은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교양과정은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6.> <개정 2022.02.03.>

제10조의2(교수방법 사전협의) ① 각 학과 소속 교원들은 학기별 전공교육과정 개설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6.>

1.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능력 배양

2.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3.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방법
4.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제고를 위한 흥미 유발 방법

〈전 호 신설 2020.11.26.〉

② 교양과목 담당 교원들은 학기별 교양교육과정 개설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강의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6.〉

1. 핵심역량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역량 제고 방안
2. 핵심역량 영역별 교과목 편성 방법
3.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방법
4.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제고를 위한 흥미 유발 방법

〈전 호 신설 2020.11.26.〉

제6장 교육과정의 적용

제11조(교육과정의 적용) ①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경우 모든 학생은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6.06.23.〉

② 삭제 〈2016.06.23.〉

③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6.23., 2024.07.23.〉

제7장 교과목의 이수원칙

제12조(교과목의 이수) ① 졸업이수 학점은 학사내규의 입학년도에 따른 학과(부)별 졸업학점 배정표의 졸업학점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08.26., 2016.06.23., 2019.02.01., 2022.04.04.〉

1. 교양교과 학점은 교양교육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2. 전공교과 학점은 단일전공 이수 시 60학점 이상, 복수전공 이수 시 3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교과 학점을 각각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08.19., 2021.11.29〉

3. 편입생의 전공교과 학점은 3학년 편입생의 경우 36학점 이상, 4학년 편입생의 경우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전 호 신설 2019.02.01.〉 〈개정 2020.08.19.〉

② 삭제 〈2019.02.01.〉

③ 교직과정 이수자는 입학연도별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맞춰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3.〉

④ 교양교과목은 저학년에서, 전공교과목은 고학년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교과목의 이수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교양필수, 전공필수로 지정된 교과는 입학연도 또는 복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맞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

과목은 특히 CDU중핵과목 및 균형교양영역 이수에 필요한 학과별 최소 이수학점기준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3., 2018.10.23., 2020.02.05.〉

⑥ 삭제 〈2016.06.23.〉

제8장 교과목의 폐강기준 및 수강인원의 제한

제13조(폐강기준) ① 전공교과목은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개설하지 아니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2022.02.03.〉

② 교양 및 교직 등 전공 외 기타 교과목은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7.09.14.〉

③ 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폐지되거나 과목명이 변경된 교과목은 동일하거나 유사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03.14.〉

제14조(수강인원의 조정) 교과목을 분반하고자 하는 경우 이론과목은 50명, 실험실습과목은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분반의 기준은 교육여건 및 강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교양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양교육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6.23., 2017.09.14., 2024.04.01.〉

제15조(시행세칙)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8.03.14., 2020.11.26.〉

제9장 위원회의 구성〈신설 2013.08.26.〉

제16조(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육과정의 변경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3.14. 2022.02.03.〉

②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14. 2022.02.03.〉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간사는 교무처 직원으로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18.09.05.〉

제17조(교양교육위원회) ① 교양교육위원회는 교양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3.14.〉

② 교양교육위원회는 HUMAN PLUS 교양학부 소속 전임교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하고, 학생 대표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HUMAN PLUS 교양학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14., 2019.12.03., 2022.02.03., 2022.06.09.〉

③ 삭제 〈2019.12.03.〉

제17조의2 삭제 〈2018.09.05.〉

제18조 삭제 〈2020.05.2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본 규정 개정 전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0000학년도 00학기 교육과정 (신설·폐지) 신청서

교과목명	국문명		학과명	
	영문명			
신 설				
개설 학년		개설 연도/학기		이수 구분
학점/이론/실습	0/0/0	평가 방법 (상대평가 원칙)	상대/절대/P.NP	수업 방식 온라인/오프라인/혼합
동일 과목 지정 여부	예/아니요	동일 과목 코드		동일 과목명
전공 능력(상/중/하)				
전공 능력명				
연계성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과목 개요				
수업 목표				
폐 지				
과목 코드		개설 학년		개설 연도/학기
이수 구분		학점/이론/실습		평가 구분
동일 과목 지정 여부	예/아니요	동일 과목 코드		동일 과목명
사유 (신설·폐지)	작성 시 유의 사항 - 사유 작성 시 교육과정, 학과발전보고서, 재학생 및 졸업생 의견, 산업체 의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 - 폐지된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신설 불가			
기대효과 (신설·폐지)				

※ 첨부: 학과 회의록 1부, 강의계획서(신설) 1부.

0000학년도 00학기 교육과정 (개편) 신청서

개편 교과목 기본정보(변경 전 내용 작성)						
교과목명	국문명				학 과 명	
	영문명					
과목 코드		개설 학년		이수 구분	전기/전선/전필	
학점/이론/실습	0/0/0	평가 방법	상대/절대/P.NP	수업 방식	온라인/오프라인/혼합	
개편사항(중복 가능 / 변경사항만 작성)						
구분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개설 학기
변경 전						
변경 후						
전공 능력(상/중/하)						
전공 능력명						
연계성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사유	작성 시 유의 사항 - 사유 작성 시 교육과정, 학과발전보고서, 재학생 및 졸업생 의견, 산업체 의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 - 변경 전·후 강의계획서 검증					
기대효과						

※ 첨부: 학과 회의록 1부, 변경 전·후 강의계획서 각 1부